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 14 집



언론중재위원회

발 간 사

오늘날 국민들의 권리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요구는 인터넷 매체의 급속한 발전과 맞물려 명예훼손 보도뿐만 아니라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등 명예이외의 인격권과 관련된 보도로까지 그 외연이 확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 소송단계 이전의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분쟁해결기관인 우리 위원회는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언론중재법에 새로 도입된 손해배상제도가 법원 소송절차와는 별개로 유효한 피해구제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한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를 더욱 탄력있게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위원회는 새 언론중재제도가 국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손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언론중재제도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정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매년 언론관련 주요판결을 수집해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을 제작해왔습니다. 이번에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각급 법원이 내린 언론관련 판결 가운데 그 중요성과 시의성을 감안하여 반론보도청구 4건, 정정보도청구 5건, 손해배상청구 30건, 기타 4건 등 43건을 선정하여 제14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판결집이 우리 위원회는 물론 일반 국민과 언론인, 언론관련 연구자 모두에게 언론피해의 사전예방 및 올바른 분쟁해결을 위한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7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조준희**

차 례

I 반론보도청구사례

1.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이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여○○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3인
(서울고등법원 2002나14114, 대법원 2004다50747) 13
2.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협상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외교통상부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6537) 27
3. 청구한 반론보도문이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거나
원보도가 인용한 제3자 의견이 실제로 표명됐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표현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언론사에 반론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정홍보처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고등법원 2006나28135) 41

II. 정정보도청구사례

1. 언론기관 자신이 비판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언론기관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판에 대한 수인범위는 그만큼 넓어진다
한국방송공사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8911) 51

<p>2.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임종인 대 주식회사 와이티엔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1378)</p>	58
<p>3. 전제되는 중요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평가적 표현에 의해 구성된 논평 또는 비평에 해당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책기획위원회 외 3인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5493)</p>	65
<p>4. 진실한 사실이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문화관광부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5462)</p>	70
<p>5.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보도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방송사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를 진다 ○○연구소 외 3인 대 한국방송공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856)</p>	77

Ⅲ. 손해배상청구사례

<p>1. 전체 강연 내용 중 특정 일부만을 발췌하여 보도함으로써 그 강연 전체의 취지를 오해하게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허위 사실의 전달이라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4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0267, 서울고등법원 2005나102241)</p>	94
---	----

2. 원 기사를 작성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390, 서울고등법원 2006나2355) 110

3. 언론의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언론이 어느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의견표명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 대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외 1인
(제주지방법원 2005가합1120, 광주고등법원 2006나298, 대법원 2006다87217) 128

4.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보도내용은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외 1인 대 정○○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8324, 서울고등법원 2006나56918) 143

5. 포토앨범 서비스 사이트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미지 파일들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삭제의무를 진다
황○○ 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92358, 서울고등법원 2006나48160) 151

6. 인터넷 쇼핑몰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메인이미지가 노출되었으므로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 대 한국방송공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4166) 155

7. 보도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주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특정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윤△△ 외 2인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2370) 163

8. 보도내용이 그 목적에 있어 공익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특별히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김○○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1인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30114) 173
9.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 대 한국방송공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16980) 188
10.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공급받는 포털사이트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는 할 수 없다
전여옥 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18300) 192
11.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도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해당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도내용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박○○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79883) 197
12. 보도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일명 ‘안기부X파일’에 등장한 화자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가 보인 보도행태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2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59554) 204

13.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의 조부가 친일파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건설산업 주식회사 외 2인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
(대전고등법원 2006나3538) 211
14. 올바른 취재원 확보 및 진술의 진실성 여부 확인에 대한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아니한 채 선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보도했을 경우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강○○ 외 17인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4032) 227
15.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인물에 대한 비판은 그 지위를 감안하여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공○○ 외 1인 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0013) 237
16. 방송사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한을 가지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 조치 없이 초상 등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초상권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8444) 249
17. 보도에서 원고를 지목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이 저하되었다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 대 한국방송공사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86190) 254
18.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박○○ 외 3인 대 주식회사 김종학 프로덕션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6290) 260

19.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못했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 된 것이 아니라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해찬 대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98871) 266
20.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김○○ 외 58인 대 주식회사 시네마서비스 외 3인
(서울고등법원 2005나68532) 274
21. 언론이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김○○ 대 주식회사 대전방송 외 1인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52747) 296
22.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차○○ 대 조선일보생활미디어 주식회사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4129) 309
23. 안기부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내용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해 관리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대 권○○ 외 4인
(서울고등법원 2004나83398) 321
24.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장○○ 외 1인 대 한국방송공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6611, 2006가합73756병합)	329
--	-----

V. 기타사례

1. 합리적인 독자나 관객의 입장에서 보아 극 중 허구와 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도, 허구의 표현 자체가 실존 인물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박지만 대 주식회사 엠케이픽처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572)	339
2. 사생활의 자유 내지 통신비밀의 보호는 이를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관심이나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호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77, 서울고등법원 2006노1725)	354
3. 신속보도에만 치우쳐 취재원 진술과 상이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고 별다른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성명서를 언론매체에 배포했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0, 2006고합263병합)	380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
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
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